

# WTO 출범 및 TR의 대두와 정보통신산업의 대응

서 승 우, 김 주 성/전자통신연구소 기술경제연구부

## □ 차 례 □

- |                               |                     |
|-------------------------------|---------------------|
| I. 서 론                        | IV.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응방향 |
| II. WTO협정 및 TR의 주요내용          | V. 맺음말              |
| III. WTO협정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                     |

### I. 서 론

1993년 12월에 일괄타결된 UR협상결과에 의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국제환경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금년 1월부터 WTO체제가 정식 출범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방안의 수립이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OECD에의 가입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라운드(TR: Technology Round)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본 고에서는 WTO협정 및 TR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예상되는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II. WTO협정 및 TR의 주요내용

#### 1. WTO협정의 주요내용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교역 활성화를 통한 세계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출범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UR협상 이전까지 7차례에 걸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위한 다자간협상(Round)을 진행시켜왔다. 8차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는 1986년 우루과이의 푸타 델 에스테에서 협상이 시작되어 1993년 12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공식서명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에따라 GATT체제는 그 종말을 맞게 되었고 새로운 국제경제체제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시대가 개막되게 되었는데 이 체제는 각국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95년 1월1일 공식 출범하였다.

WTO협정 타결의 의의로는 공산품의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달성하였다는 점, 기존 GATT가 다루지 못했던 섬유, 농산물 등을 다자간협상체제로 복귀시켰다는 점,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도 포괄함으로써 광범한 경제활동을 다자간 교역체제내에 흡수하였다는 점, WTO의 설립을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관할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DSB)를 설치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였다는 점, 무역정책 평가기구(TPRB)의 설치를 통해 사전적으로 무

역분쟁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켰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WTO 최종협정문은 총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매우 광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보통신산업 산업정책과 관련이 높은 조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공산품 관세인하협정에 있어서 미국 및 EC는 산업용, 사무용 전자기기는 평균 60% 인하고, 반도체, 반도체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5년 무관세화하기로 양허하였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입출력장치는 10년 무관세화, 반도체는 5년 무관세화, 반도체장비는 국산화 불가품목의 경우 10년 무관세화하기로 양허하였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에 있어서는 기술장벽에 관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술규정의 무역장벽화를 제거하기 위해 상대국의 요청시 자국의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표준 채택의무 및 지방정부와 비정부 표준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적합성 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및 관련 정보제공의 명료화할 것을 규정하고, 국가간 시험, 검사의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적합성 판정결과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장려하고 있다.

서비스교역 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편서비스와 택배서비스는 양허하지 않았으며, 전기통신분야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자유화를 약속하였다. 또한 기본통신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기본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화 협상방식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지적재산권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CP의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하고 CP를 구성하고 있는 사상, 절차, 운용방법, 수적개념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C배치설계권의 보호범위는 IC의 배치설계는 물론, 보호되는 배치설계가 결합된 IC, 보호대상인 배치설계가 포함된 IC를 내장된 최종제품을 상업적 목

적을 위하여 수입, 판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은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 기술적 사양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다만 협정적용 배제를 위한 예외 조항에 중소기업 특별구매제도 등 예산회계법상의 수의계약사항, 한국 전력의 일부 중전기기 품목구매, 한국통신의 통신망장비 및 일반통신제품 구매 등을 포함시켰다.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서는 보조금을 산업체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지원(financial contribu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조금의 유형은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을 포함하는 금지보조금, 특정성이 있으면서 타 체약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는 상계가능보조금, 특정성이 없거나 특정성이 있다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을 포함하는 허용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금지보조금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3년, 개도국의 경우 8년 이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상계가능보조금의 경우 패해국의 제소에 의해 관세로서 상계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 TR의 주요내용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 : TR)는 기술개발정책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총칭하는 말로서 OECD의 신국제규범(New Rules of the Game)과 WTO협정에서의 연구개발 관련 보조금 조항, 지적재산권조항, 기술장벽조항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OECD에 의한 신국제 기술규범의 대두는 경제규범과 기술규범의 통합 필요성 증대, 각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이해의 필요성 증대,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기존 규범의 보완 및 추가규제의 필요성 증대에 그 배경을 두고있다.

신국제 기술규범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부의 R&D 지원정책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기업의 R&D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정부자원

을 통해 이루어진 R&D성과, 기업의 지원을 받아 대학이 수행하는 R&D활동 등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기초연구, 과학기술의 Infrastructure구축, 기술개발 여건조성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주도의 과학기술 개발노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숨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공동연구에 대한 접근보장과 성과의 공유성문제로서 공동연구활동에의 공정한 참여보장, 공동연구에서 제외된 그룹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R&D활동의 세계화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해외 R&D활동을 전개하는 기업들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기술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각국 정부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에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연구환경 및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과학기술인력의 자유이동문제과 관련하여서는 교육, 훈련 및 노동시장의 정책과 관련된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egascience 프로젝트에 관한 국제협력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연구에 관한 비용분담문제, 지적소유권 분배문제 및 공동연구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한 연구성과의 접근 허용문제등을 다루고 있다.

### III. WTO협정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UR협상의 타결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불리한 영향 보다는 유리한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개별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정보통신기기산업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통신기기산업에 대한 유리한 영향중 하나가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대효과이다. 선진국 제품의 경우 관세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GSP수혜를 받고 있는 후발개도국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현행 관세율이 20~50%수준인 ASEAN, 중남미 국가등의 관세인하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본체는 관세인하폭이 적어 국내산업 보호가 가능하며 모니터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경우 선진국의 무세화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마이크로세서 등 반도체 소자에 대한 관세인하로 정보통신기기의 생산 원가절감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기술장벽을 많이 활용해 온 선진국에의 진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의 사전입수에 의한 사전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선진국의 규격 획득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과의 경쟁품목의 경우 개도국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국산기기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외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으로 통신기기 및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조달시장 참여는 국가간 통산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선진국 조달시장에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보통신기기산업에 미칠 불리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잉크젯트 프린터 등 첨단기술제품으로서 무관세 대상품목중 저가형·중소기업형 제품의 경우 개도국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되며, 기기업체에 대한 수출 및 수입대체 보조금 지급금지로 관련제품의 경쟁력 저하 및 기업활동의 저하 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첨단 시스템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산업지원수단의 감소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첨단기술 습득의 곤란, 특허분쟁 발생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수도 있으며 국내 정부조달시장에의 선진 외국업체

제 참여로 국내 조달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높다.

#### IV.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응방향

WTO출범 및 TR의 대두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산업측면에서 있어서 개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정부보조금 배분방식이 UR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인 기반조성형 지원의 비중을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인력 DB구축 지원,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기술정보 제공, Techno-Mart의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질적(質的)강도를 높여나가 기 위해 국가차원의 중요성이 높은 국책연구과제의 경우 용자보다는 출연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지원제도의 객관성, 명료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산업지원을 위한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책적 비전제시, 집단간 이해조정 등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 수단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해 나가며 이를 위해 육성대상품목/기술 및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명료화, 법제화해 나가야 한다. 수혜기준 및 금액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여 특정성에 대한 시비의 여지를 줄여 나가야 하며, 국제규범에 따른 현행지원제도의 전면적 보완 및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중장기 개편방안을 수립하며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특허획득이 가능한 원천기술의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특히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가능케 하는 독창적인 원천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분야를 특화해 나가야 하며, 원천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능력의 축적을 위한 연구자원 투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의 연구단계별 구분을 통한 별도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연구단계에서 상용화개발단계까지 전주기가 포함되어 있는 대행국책과제를 산업연구로 볼 수 있는 기초연구단계와 경쟁전 연구활동단계로 볼 수 있는 응용연구단계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연구단계부터는 연구결과의 전수를 통해 가능한 한 민간업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개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WTO체제의 출범과 TR의 대두는 정보통신산업계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주고있다. 이러한 다자간협상이 우리의 자의에 의해 회피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주로 선진국의 논리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는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세계화와 기술의 선진화와 민간 및 정부의 대처노력에 따라 국내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 각계의 합치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筆者紹介

▲서 승 우

- 1949년 8월 5일생
- 1973년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1976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산업공학전공(석사)
- 1983년 : 뉴욕주립대학 경영학 석사
- 1976년~1981년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 1985년~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

▲김 주 성

- 1960년 3월 5일생
- 1983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전공(석사)
- 1985년~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